##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2

발의연월일: 2021. 6. 11.

발 의 자:정청래·송갑석·김남국

이수진・유정주・이규민

강민정 · 오영환 · 양이원영

강득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2022년부터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 7년, 2026년 부터는 경력 10년을 채워야 판사 임용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임금과 정년을 고려하면 이미 자리 잡은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할 유인이 적은 실정임. 실제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법원은 법관을 뽑는 데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이 올 초 발간한 법관 임용관련보고서도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바었음.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경력을 조정해 좋은 법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고등법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을 임용하도록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42조제2항). 법률 제 호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10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
	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u>10년 이상</u> 제1항 각	② <u>5년 이상</u>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고등법
	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
	서 임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